

##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4조(변소)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지하층의 설치)중 "건축법 제22조의3항"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 손실 방지)중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  
로 한다.

동조제1호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를 "건축물의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로 한다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를 "건축물의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5"로 한다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중 "건축법 제27조제1항"을 "건축법제 3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건축선의 지정)중 "건축법 제30조제1항"을 "건축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중 "건축법 제31조제2항"을 "건축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 11조 (건폐율)중 "건축법 제 39조" 를 "건축법 제 47조"로 한다

제 12조 (대지면적의 취소한도)중 "건축법 제 39조의 2제 2항" 을 "건축법 제 49조제 2항"으로 한다

제 1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 "건축법 제 41조"를 "건축법제 51조및건축법시행령 제 86조 제 1호" 로 하고 , 동조제 3호나목중 "건축법시행령 제 90조제 3호나목 및 다음" 을 "건축법시행령 제 86조제 2호나목"으로 한다

제 15조 (대지안의 금지)중 "건축법 제 41조의 2" 를 "건축법 제 50조"로 한다

동조제 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92조제 1항" 을 "건축법시행령 제 81조제 1호"로 한다

동조제 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92조제 2항" 을 "건축법시행령 제 81조제 2호"로 한다

제 17조 (주택의 건설기준)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4제 2호다목과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 3조, 제 14조, 제 22조 내지 제 24조의 2, 제 27조, 제 29조, 제 30조 및 제 38조" 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조, 제 19조, 제 25조, 제 27조, 제 29조, 제 35조, 제 46조, 제 47조, 제 52조 및 제 53조"로 한다

##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